비식별화 정보 어디까지 활용이 가능한가?

이 오 은

1. 데이터3법 개요 및 주요내용

데이터3법 개정 개요

- 2020년 1월 데이터 업계의 숙원이었던 데이터 3법(개인정보 보호법, 신용정보법, 정보통신망법)이 국회에서 통과
  - 데이터 3법 에서는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개념 도입하여 비식별(가명) 조치 후 동의없이 산업적 통계 등 연구 목적 활용,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격상 등이 법제화

법안의 주요내용

- 데이터3법의 핵심은 개인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(비식별조치) 한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·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데이터 활용을 높이고
- 이를 기반으로 '마이 데이터(My Data) 산업'을 도입하는 게 핵심

법률명	주요 개정안
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	- 개인정보 관련 개념을 개인정보, 가명정보, 익명정보로 구분한 후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·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(상업적으로 이용 가능) - 가명정보 이용 시 안전장치 및 통제 수단을 마련 - 행정안전부, 금융위원회,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을 통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-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	-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 -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및 감독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	- 가명조치한 개인신용정보로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 - 가명정보는 통계작성,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·제공할 수 있음

데이터 3법에 대한 평가

- **(이전) 이전에는 개인의 신분을 드러낼 여지가 있는 데이터는 수집과 가공이 불가능**
  -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의 신분이 드러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는 있는 데이터도 개인정보로 간주했기 때문에 각 개인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불법
- **(현재)** 하지만, 데이터 3법 통과로 기업들은 개인의 동의 없이 **비식별화 데이터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** 되었고 개인정보 거버넌스의 일원화 등으로 데이터 경제의 기틀을 닦았다는 평가
  - 반면, 진정한 데이터 경제를 실현하려면 **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**는 의견도 존재

2. 이번 개정으로 이용가능한 정보는?

비식별화된 정보는 동의없이 사용가능

- **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및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 내에서만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비식별화(가명)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됨**
  - 단, 이런 목적을 위해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**비식별화(가명)** 정보를 결합할 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함
  - 개인정보처리자는 **비식별화(가명)**정보를 처리할 때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해 관리해야 하며,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음
- **이번 개정에 따르면 적절하게 가명정보를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3% 이하 또는 4억 원의 과징금,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**

개인정보보호법 & 신용정보법

개인정보보호법	신용정보법
제28조의2(가명정보의 처리 등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.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.	**제32조(개인신용정보의 제공·활용에 대한 동의)** ① 신용정보제공・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・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⑥ 신용정보회사등(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)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**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**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**적용하지 아니한다**. 9의2. 통계작성,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. 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,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.

3. 비식별화란?

비식별화의 정의

◆비식별화(非識別化, de-identification)는 누군가의 정체성이 공개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과정*으로 크게 아래 2가지가 방법이 있음

- 익명화(匿名化, Anonymization) : 개인식별정보 삭제 혹은 알아볼수 없게 변환
- 가명화(假名化, Pseudonymization)

*** 국제 표준화 기구 ISO/IEC 20889 표준의 정의**

- 비식별화 과정 : 정보주체와 식별속성의 집합 간에 연계를 제거하는 과정
- 비식별화 기술 : 정보가 개인정보 주체와 연계되는 정도를 감소할 목적으로 데이터 집합을 변환하는 방법

(NIA,TTA 자료 재구성, 2015)

비식별(가명)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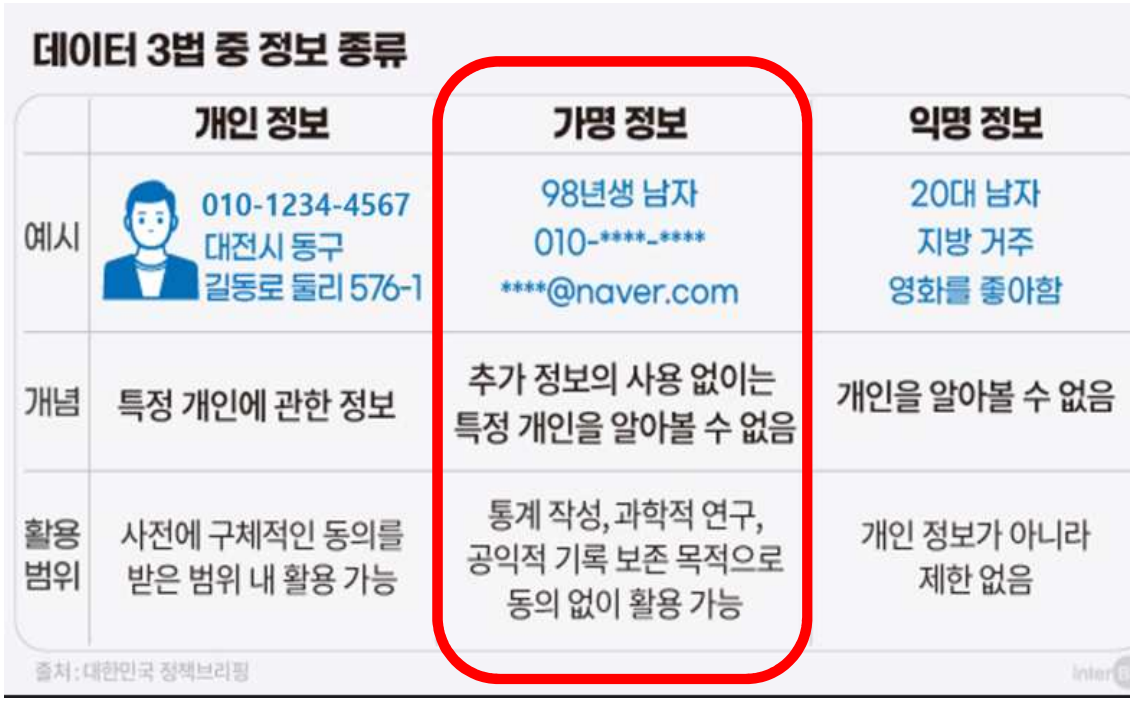

(대한민국 정책브리핑, 2020)

-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,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의미
  -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일종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

<개인정보보호법 제2조(정의) >

1. "개인정보"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.

다.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·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(이하 "가명정보"라 한다)

가명정보의 정의(개인정보보호법 & 신용정보법)

개인정보보호법	신용정보법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4. 3. 24., 2020. 2. 4.> 1. **"개인정보"**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. 가.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.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.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, 비용,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 다.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**가명처리**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·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(이하 **"가명정보"**라 한다)	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1. 5. 19., 2015. 3. 11., 2020. 2. 4.> 2. **"개인신용정보"**란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. 가. 해당 정보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.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16. "**가명정보**"란 **가명처리**한 **개인신용정보**를 말한다.

즉, 개인정보로서 가명처리*를 하여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개인특정이 불가한 정보

4. 비식별 조치란?

가명정보의 정의(개인정보보호법 & 신용정보법)

개인정보보호법	신용정보법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4. 3. 24., 2020. 2. 4.>	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1. 5. 19., 2015. 3. 11., 2020. 2. 4.>
1의2. **"가명처리"**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.	15. **"가명처리"**란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*(그 처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0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추가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는 등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경우를 포함한다)*하는 것을 말한다. 가. 어떤 신용정보주체와 다른 신용정보주체가 구별되는 경우 나. 하나의 정보집합물(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처리할 목적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구성되거나 배열된 둘 이상의 정보들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서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정보집합물 간에서 어떤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둘 이상의 정보가 연계되거나 연동되는 경우 다.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비식별 조치 방법

◆ 비식별 처리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음

- 가명처리
- 익명처리(총계처리, 데이터삭제)
- 데이터범주화, 마스킹 등

◆ '가명처리'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기법으로,

- 성명 및 기타 고유 특징을 비식별 처리할 때 사용
  - ✓ (장점)데이터 변형 또는 변질 수준이 적은 것이 장점이며,
  - ✓ (단점) 반면, 대체 값을 부여해도 식별 가능한 고유 속성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 단점

● 〈 예시 〉 비식별 조치 방법 ●

처리기법	예시	세부기술
가명처리 (Pseudonymization)	• 홍길동, 35세, 서울 거주, 한국대 재학 → 임꺽정, 30대, 서울 거주, 국제대 재학	① 휴리스틱 가명화 ② 암호화 ③ 교환 방법
총계처리 (Aggregation)	• 임꺽정 180cm, 홍길동 170cm, 이콩쥐 160cm, 김팥쥐 150cm → 물리학과 학생 키 합 : 660cm, 평균키 165cm	④ 총계처리 ⑤ 부분총계 ⑥ 라운딩 ⑦ 재배열
데이터 삭제 (Data Reduction)	• 주민등록번호 901206-1234567 → 90년대 생, 남자 • 개인과 관련된 날짜정보(합격일 등)는 연단위로 처리	⑧ 식별자 삭제 ⑨ 식별자 부분삭제 ⑩ 레코드 삭제 ⑪ 식별요소 전부삭제
데이터 범주화 (Data Suppression)	• 홍길동, 35세 → 홍씨, 30~40세	⑫ 감추기 ⑬ 랜덤 라운딩 ⑭ 범위 방법 ⑮ 제어 라운딩
데이터 마스킹 (Data Masking)	• 홍길동, 35세, 서울 거주, 한국대 재학 → 홍○○, 35세, 서울 거주, ○○대학 재학	⑯ 임의 잡음 추가 ⑰ 공백과 대체

(행안부, 2016)

비식별화 적정성 평가

- 기업 및 기관이 진행한 비식별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공개 정보 등 다른 정보와의 결합 또는 다양한 추론 기법 등을 통해 개인이 식별될 우려가 있음
- 따라서, 기업 및 기관들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책임 하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'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단'을 구성해 개인식별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필요

●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에 필요한 기초 자료 ●

구분	기초자료	비 고
데이터 명세	• 데이터 특성(크기, 생성 및 관리 환경 등), 세부 항목별 명세, 원본 예시	필수사항
	• 비식별 조치된 평가 대상 데이터 셋 및 세부 항목별 명세	필수사항
비식별 조치 현황	• 비식별 조치에 적용한 기법 · 세부기술	필수사항
	• 평가 대상 데이터 셋에 대한 k-익명성 값 산출 결과	필수사항
이용기관의 관리수준	• 데이터 이용 기관의 이용 목적 및 방법, 이용기간, 데이터 접근 가능자 현황 등 활용에 관한 사항	필수사항
	•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데이터를 제공받는 방법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에 대한 현황	필수사항
	• 데이터 이용 및 제공과 관련이 있는 계약서 또는 협약서 사본 ※ 계약서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시	필수사항
	• 데이터 이용 기관에서 보유하거나, 보유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(세부 내용)에 관한 사항	선택사항
	• 데이터 이용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보호 관련 인증서 사본	선택사항

(행안부, 2016)

5. 여전한 문제점

문제점1 : 기존법보다 더 엄격한 요구

◆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규제가 엄격

-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1)추가처리 목적과 당초 수집목적과의 상당한 관련성 2)수집한 정황과 처리관행에 비춘 예측 가능성 3)추가처리가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4)가명처리로 추가처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가명처리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 이용·제공할 수 있게 함

◆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되는 법률보다 엄격하고 신용정보법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음

-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(GDPR)보다 우리 시행령이 더욱 엄격하다는 평가도 있음

개인정보보호법

개인정보보호법	시행령
제28조의2(가명정보의 처리 등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.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.	**제14조의2(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·제공의 기준 등)**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**정보주체의 동의 없이**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(이하 "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"이라 한다)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 1.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.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.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.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

문제점2 :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간 불일치

1)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과 신용정보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가명정보 결합절차와 가명정보 처리 수준이 다름

- 신용정보법 시행령은 데이터 결합절차가 간단하고 가명정보 처리 수준이 명확한 데 반해, 개인정보법 시행령은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수준이 모호
- 결합된 정보를 결합전문기관 내 물리적 공간에서만 분석해야 하고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 역시 원활한 데이터 결합을 막는 장애요인

2) 신용정보법 vs. 개인정보보호법

신용정보법 시행령	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
제14조의2(정보집합물의 결합 등) ②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려는 신용정보회사등 및 제3자(이하 이 조에서 "결합의뢰기관"이라 한다)는 공동으로 법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(이하 "데이터전문기관"이라 한다)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양식에 따라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신청해야 한다. ③ 결합의뢰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은 정보집합물을 결합·제공·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. 1. 결합의뢰기관이 정보집합물을 데이터전문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 제공할 것 가. 하나의 정보집합물과 다른 정보집합물 간에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, 연동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는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구별할 수 있는 정보(이하 "결합키"라 한다)로 대체할 것 나.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정보집합물은 가명처리할 것 2. 결합의뢰기관이 결합키를 생성하는 절차와 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결합의뢰기관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것 **3. 결합의뢰기관이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을 제공하거나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집합물의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 전달할 것** 4.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하기 전 결합키를 삭제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것 5.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된 정보집합물의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한 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시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하여 전달할 것 6.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한 후 결합한 정보집합물 및 결합 전 정보집합물을 지체 없이 삭제할 것	**제29조의3(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)** ① 결합전문기관에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(이하 "결합신청자"라 한다)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결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한다. ② 결합전문기관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해야 한다.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필요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보호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. **③ 결합신청자는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를 결합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결합전문기관에 설치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·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에서 제2항에 따라 결합된 정보를 가명정보 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결합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** **④ 결합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반출을 승인해야 한다. 이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결합된 정보의 반출을 승인하기 위하여 반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.** 1. 결합 목적과 반출 정보가 관련성이 있을 것 2.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없을 것 3. 반출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이 있을 것 ⑤ 결합전문기관은 결합 및 반출 등에 필요한 비용을 결합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.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명정보의 결합 절차와 방법, 반출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문제점3 :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

◆ **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부여되는 징역형이 있어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**

- (예시)일반 개인정보처리자의 무단 수집은 형사처벌 없이 5000만원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에 비해
-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행위에 관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

◆ **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시 침해 및 유출에 대한 사고 관리 방법 모호**

- 현재 개인정보에 준하는 기술적·관리적 조치로 가명정보를 관리하게 돼 있음
- 그러나 가명정보 3자제공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 하므로 공적기관에서 가명데이터의 위험보증 등을 해줄 필요가 있음

개인정보보호법 – 벌칙 조항

개인정보보호법

제71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6. 3. 29., 2020. 2. 4.>

4의4. 제36조제2항(제27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와 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정정·삭제 등 필요한 조치(제38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포함한다)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

4의5. 제39조의3제1항(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

제39조의3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) ① **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**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,2.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, 3. 개인정보의 보유·이용 기간

6. 또다른 문제

-신용정보법 시행령 주문내역정보-

신정법의 주문내역정보 제출 요구

◆ **8월4일 공포된 신용정보법 시행령에서 전자금융업자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의무제공해야 할 데이터에 '주문내역정보'를 포함하고 있어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**

1) '주문내역정보' 는 개인신용을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난 과잉입법

✓ 신용정보법상 **'주문내역정보'는** 동법에서 정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기 위한 신용정보에 해당할 수 없음

※ 짬뽕이냐 짜장면을 시켜먹는지, 조국흑서를 구매했는지 조국백서를 구매했는지로 그 사람의 신용도를 측정할 수는 없음

2) '주문내역정보'는 모든 '전자금융업자'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형평성에 어긋남

✓ '주문내역정보' 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사업을 통해 발생한 구매내역 데이터로 구매품목, 종류, 수량 등

✓ 이를 모든 전금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했지만, 결국 통신판매업(전자상거래)자만 동 정보를 제공해야 됨

3) 주문내역정보에는 성생활, 사생활, 건강 및 사상 등 개인 민감 정보가 들어가 있어 개인동의를 받기 어렵고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유출시 사회적 문제의 소지가 큼

✓ 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더라도 신용정보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것이지 개인민감정보에 대한 동의는 아니기 때문에 이는 따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함

※ 항공, 숙박 이용기록, 사상도서, 건강식품, 성인용품, 요실금팬티, 속옷 등의 구매내역 정보 유통

(참고) 신용정보법 시행령 [별표1]

5. 법 제2조 제9호의2 마목에 따른 신용정보

나. 전자지급수단 관련 정보

1) 전자화폐 정보 : 전자화폐 충전금액, 전자화폐 충전수단, 전자화폐 충전 등록일 등

2) 전자자금 송금 정보 : 송금등록 계좌번호, 송금내역 정보, 예약송금 내역정보 등

3) 포인트 정보 : 포인트 금액, 포인트 종류, 포인트 내역 등

4) 결제 정보 : 결제등록 카드정보, 정기결제 관리정보, 결제내역 정보, 주문내역정보, 환불내역 정보 등

5) 전용상품 정보 : 전용카드 보유정보, 전용카드상품 보유정보, 전용카드 이용내역 등

6) 그 밖에 1)부터 5)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

❖ **(법 2조 9의2)** "본인신용정보관리업"이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

마.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본인의 신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

결론 및 제언

◆ **비식별 정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하며,**

◆ **이러한 불명확성이 해소되어야 의미있는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**

① 개인정보 비식별 가이드라인이 산업별로 마련돼야 할것

②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간의 차이가 있어 그 간극을 줄일 필요 있음

③ 신용정보법상 주문내역정보 제공의무는 삭제필요

감사합니다.